

## 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787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6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572)

#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대련건설(편명철), ②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(고중혁),  
③롯데건설(주)(박현철), ④(주)유신(박석성)

나. 전화번호 : ①02-906-3010, ②02-820-6139, ③02-3480-9114, ④02-6202-0114

#### 2. 명칭 :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보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

#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> 교량 > 교량거더

<기술의 요지>

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, 암나사와 수나사로 구성된 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이루어진 강관가로보로서, 사전 제작된 강관가로보를 거더 설치후 즉시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재래식 가로보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고소작업 최소화와 공기단축이 가능하고, 가로보 자체의 길이조정으로 거더의 횡변위를 보정할 수 있는 시공성 및 안전성이 개선된 프리랩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임

<범위>

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, 암나사와 수나사로 구성된 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이루어진 강관가로보로서, 콘크리트 거더에 발생하는 횡변위를 가로보 자체의 길이조정 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횡변위의 보정이 가능한 프리랩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

#### 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7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